



보건복지부	보	도 참	ュ	자 료	
배 포 일	2020. 8. 23. / (총 12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박 은 정 한 연 수		044-202-1711 044-202-171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팀 장 담 당 자	김 성 훈 박 현 수		044-200-2293 044-200-2295	
서울특별시	과 장	김 정 일	전 화	02-2113-766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유 효 연		02-2133-7669	
인천광역시	단 장	안 광 찬	한 최	032-440-7801	
코로나19대응 추진단	담 당 자	이 은 실		032-440-7849	
경기도	과 장	윤 덕 희		031-8008-542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최 문 갑		031-8008-5422	
여성가족부	과 장	양 철 수		02-2100-6361	
가족문화과	담 당 자	김 영 숙		02-2100-636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 ▲마스크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전국에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지만 등교수업 등 준비가 필요한 일부 분야는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하면서, 교육부는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학생일정 조정, 지역·학교·학년별 등교인원 등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일선학교가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 정 본부장은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는 온라인 환경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며, 역학조사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행위도 일벌 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법무부·방통위·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게 정부의 방역조치를 조롱하고 무력화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 하는 제재수단을 총동원하여 엄단하고, 처벌 내용도 국민들에게 잘 알려서 불안감이나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환자 발생 추이와 감염 양상 등을 살펴볼 때,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 8월 9일(일)부터 8월 22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62.1명으로 이전 2주간(7.26.~8.8.)의 12.0명에 비해 150.1명 증가하였다.











-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은 18.5%에 달하며, 방역망 내 관리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가 136.7명으로 큰 비중(84.3%)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회와 집회에서 시작한 감염이 여러 곳으로 전파되며 전국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7월 26일 ~ 8월 8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12.0명
수도권	10.2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21.6명
<b>집단 발생<sup>1)</sup></b> (신규 기준)	9건
감염 경로 불명 비율	8.3% (39/470)
방역망 내 관리 비 <del>율<sup>2)</sup></del>	80% 초과

8월 9일 ~ 8월 22일
162.1명
136.7명
12.1명
30건
18.5% (451/2440)
80% 미만

 $\Box$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해외유입 환자는 최근 2주간 1일 평균 12.1명이 발생하였으며, 이전 2주(7.26.~8.8.)에 비해 9.5명이 감소하였다.
- 특히, 지난 1주간(8.16~8.22) 국내 발생한 일 평균 신규 환자 수는 268.4명이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의 비율도 20.2%에 달하고 있다. 또한,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역시 80% 밑으로 떨어져 방역 통제력이 상당히 약화된 상황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이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문턱에 서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전 국민의 각별한 동참을 요청하였다.











## 2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광복절 집회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당일 광화문 인근에 30분 이상 머물렀던 **10,576명에 대해 조사** 중이다.
    - 자치구별로 **진단검사 시행여부와 증상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연락이 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은 경찰청과 협조하여 소재지를 파악하고 **방문 조사**할 계획이다.
    - 또한 8월 21일(금)부터 8월 30일(일)까지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전 신고된 집회 총 1,654건 중 1,392건 (84.2%)이 취소되었다.
    - 10인 미만으로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현장 관리**를 할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총 2,134개소, 해수욕장 7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 주말을 맞아 시·군·구 합동으로 관내 모든 교회시설 4,066개소에 대하여 대면예배, 모임, 행사, 단체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경기도는 다수의 집단감염 발생으로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8월 22일(토)부터 생활치료센터 1개소를 추가하는 등 공공의료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 3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로부터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을 보고받고 점검하였다.
  -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예비부부 및 결혼 예식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예식업중앙회를 통해 안내하였다.
- □ 결혼식은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는 주최 측(신랑· 신부)을 포함한 관련 하객들의 총인원이며, 결혼식장 진행요원은 제외된다.
  - 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50인 미만의 인원이 머물러야 하며, 다른 공간에 머무르는 인원과의 접촉이 없어야 한다.
  -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식당, 로비, 연회홀 등의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은 하객 간의 접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 □ 마스크는 음식 섭취시 외 실내에서는 착용하여야 한다.
  -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도 모두가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도 착용하여야 한다.
  - 다만, 신랑·신부에 한하여 결혼식장 입·퇴장, 메이크업 후에 기념 사진 촬영 시를 포함하여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예외가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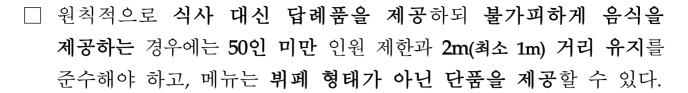












- □ 결혼예식업체는 고객에게 2단계 거리 두기에 따른 변경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예식홀 및 식당에서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예식업중앙회가 8월 20일(목)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수용하여 ①소비자가 연기 요청 시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②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 인원을 감축 조정한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은 **비회원 예식 업체도**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권고하였다.

## 4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현황

- □ 정부는 추적과 검사, 격리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적극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지난 금요일(8월 21일 0시)부터 운영을 시작한 **수도권 긴급대응반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병상을 배정**하고 있으며, 신규 배정환자 가운데 **84%가 경증으로 분류되어 생활치료센터로 배치**되었다.
  - 8월 22일(토) 20시 기준 수도권의 **중증환자 치료병상의 병상가동률** 은 62.8%로 70개 병상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며,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은 63.9%로 총 1,804개의 병상 중 652개 병상의 여유가 있다.











- 한편 경증·무증상 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8월 22일(토)에 2개소(한전인재개발원, 경기교육연수원)를 개소하여, 344실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 이에 따라 총 **5개소**의 생활치료센터가 운영 중(가동률 65.5%)에 있으며, **403명이 입소가 가능**한 상황이다.
  - 정부는 다음 주 초까지 생활치료센터 2개소를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며, 입소가능 규모를 3천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치 사항
  - 3. 국민 행동 지침
  - 4.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2. 안전하고 쿨~한 여름방학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行)·3금(禁) 수칙 포스터
  - 3. 안전하고 쿨~한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 (行)·3금(禁) 수칙 포스터
  - 4.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 5.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7.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8. 「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 9.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10.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6.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7.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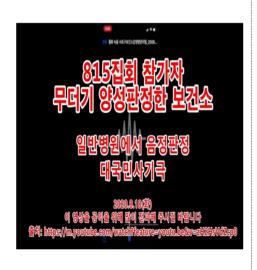
##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 신뢰성 등에 대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생산**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자단에 집중해야 알 시기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사례 >

< 보건소에서 의도적으로 양성판정 했다는 내용 관련 >



-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뒤 자체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받은 재검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의 통화를 담은 영상
- 1) 검체 채취는 **환자의 소속 배경이나 정보 없이** 의료적 목적으로 **채취**
- 2) 검사 대부분은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지며, 검사 과정은 PCR 기기에 실시간 기록
- ☞ 의료진 양심에 따라 진행되며, 의료인의 판단결정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불가능 (8.19. 방대본 브리핑 중)

2020년 8월 17일 월요일

사랑제일교회 장로님과 전도사님 부부가 보건소에서 확진 받고 백백원에서 재검했는데 음성판정 오늘저녁 <u>7시</u>에 나왔습니다

설마설마했는데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보건소 검사에서 양성 나오시는분들은 무조건 병원에서 재검 받으세요

-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후, **이틀 뒤 병원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 1) 두 검사는 모두 동일한 검사기관에서 진행
- **2) 잔여검체** 활용 **재검 결과 기존과 동일**(보건소 검체 양성, 병원 검체 음성)
- 3) **양성** 판정 후 **2일 후 검사한 것으로, 바이러스량** 감소에 따른 결과 변화

※ 2번째 사진 출처 : 유튜브(사용자 : 시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 수도권 8.19. 0시, 수도권 외 지역 8.23. 0시(학교는 8.26일)부터 시행

구분		조치사항	
집 합 · 모임 · 행 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 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다중 이용 시설 민간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현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 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中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학교		O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b>원격수업 전환</b> O 이외 지역은 <b>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b>	
기관, 기업	공공	O <b>유연·재택근무</b> 등을 통해 <b>근무인원 제한</b> (예 : 전 인원의 1/2)	
	민간	O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b>근무인원 제한 권고</b>	











## 국민 행동 지침

# [국민 행동 지침]

-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 ②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 \*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 (PC, 휴대폰 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 ③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 마스크를 벗게 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 (거리 두기)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 별첨

####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